

휘문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총론 개정안 주요변경사항

휘문고등학교

□ 추진 배경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본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 상·별점제와 학생선도협의회 심의 사안을 분리하여 학생생활규정의 교육적 효과 증대 요구

□ 주요 개정 사항

1. 상·별점제 운영에 관한 조항 내용의 구체화

- 가. 별점 산정일을 구체화하였고, 별점 누적에 따른 지도단계와 방법을 명료화함.
- 나. 내용

제12조(상·별점제 운영)

- ⑧ (누적 별점 산정일) 다음 각 호를 기준일로 하여 제12조제1항의 별점 누적 합계로 지도 대상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기준일을 2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1차 누적 별점 산정일은 1학기 중간고사 시작일로 한다.
 2. 2차 누적 별점 산정일은 1학기 기말고사 시작일로 한다.
 3. 3차 누적 별점 산정일은 2학기 중간고사 시작일로 한다.
 4. 4차 누적 별점 산정일은 2학기 3학년 기말고사 시작일로 한다.
- ⑨ 해당 학년도 11월 이후에는 수시로 제12조제1항의 별점 누적 합계 점수로 지도 대상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 ⑩ 별점 누적 합계 점수에 따른 지도 대상학생의 지도단계와 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단계	별점 누적 합계	지도사항	비고
1	별점 누계 14점 이하	담임교사 또는 인성교육부장 상담	학부모 상담 권장(징계 예방지도)
2	별점 누계 15점 이상 29점 이하	학생선도협의회 심의	
3	별점 누계 30점 이상 39점 이하	학생선도협의회 심의	학교장 통고 심의
4	별점 누계 40점 이상 49점 이하	학생선도협의회 심의	학교장 통고 심의
5	별점 누계 50점 이상 59점 이하	학생선도협의회 심의	학교장 통고 심의
6	별점 누계 60점 이상	학생선도협의회 심의	학교장 통고 심의

- ⑪ 동일학년도 내에서 학생선도협의회 심의에 의해 ‘학교 내의 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이 처분을 이행하여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별점이 경감된 후 누적된 별점이 다음 누적 별점

산정일 기준 15점 이상 29점 이하일 경우에는 학생선도소협의회 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⑫ 동일학년도 내에서 학생선도소협의회 심의에 의해 ‘학교 내의 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이 처분을 이행하여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별점이 경감된 후 누적된 별점이 다음 누적 별점 산정일 기준 30점 이상일 경우에는 학생선도협의회 심의 대상이 된다.
- ⑬ 동일학년도 내에서 학생선도협의회 심의에 의해 ‘사회 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이 처분을 이행하여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별점이 경감된 후 누적된 별점이 다음 누적 별점 산정일 기준 30점 이상 39점 이하 일 경우에는 학생선도협의회 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⑭ 동일학년도 내에서 학생선도협의회 심의에 의해 ‘사회 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이 처분을 이행하여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별점이 경감된 후 누적된 별점이 다음 누적 별점 산정일 기준 40점 이상일 경우에는 학생선도협의회 심의 대상이 된다.
- ⑮ 동일학년도 내에서 학생선도협의회 심의에 의해 ‘특별 교육’ 처분을 받은 학생이 처분을 이행하여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별점이 경감된 후 누적된 별점이 다음 누적 별점 산정일 기준 40점 이상 49점 이하 일 경우에는 학생선도협의회 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⑯ 동일학년도 내에서 학생선도협의회 심의에 의해 ‘특별 교육’ 처분을 받은 학생이 처분을 이행하여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별점이 경감된 후 누적된 별점이 다음 누적 별점 산정일 기준 50점 이상일 경우에는 학생선도협의회 심의 대상이 된다.
- ⑰ 동일학년도 내에서 학생선도협의회 심의에 의해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이 처분을 이행하여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별점이 경감된 후 누적된 별점이 다음 누적 별점 산정일 기준 50점 이상 59점 이하일 경우에는 학생선도협의회 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⑱ 동일학년도 내에서 학생선도협의회 심의에 의해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이 처분을 이행하여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별점이 경감된 후 누적된 별점이 다음 누적 별점 산정일 기준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학생선도협의회 심의 대상이 된다.
- ⑲ 동일학년도 내에서 학생선도소협의회 또는 학생선도협의회 심의에 의해 1회 이상 처분을 받은 학생이 4차 누적 별점 산정일을 기준으로 15점 이상의 누적 별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12조10항에 따라 지도한다.

2. 상·별점표의 특별사안 항목을 삭제하고 징계 사항으로 신설

가. 상·별점표의 특별사안 항목을 삭제하고 내용을 현행화하였으며 학생생활규정의 징계사항으로 신설함.

나. 내용

④ 징계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항	내 용	학교 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1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누적 별점이 15점 이상 29점 이하인 학생	○				

2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누적 벌점이 30점 이상 39점 이하인 학생		○			
3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 49점 이하인 학생			○		
4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누적 벌점이 50점 이상 59점 이하인 학생				○	
5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누적 벌점이 60점 이상인 학생					○
6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반항, 욕설, 불손한 태도, 도주 등)		○	○	○	○
7	교권을 침해한 학생		○	○	○	○
8	불법집회, 불량 동아리 조직 및 운영한 학생		○	○	○	○
9	흡연 또는 음주를 하거나 동조한 학생		○	○	○	○
10	타인의 명예훼손, 스토킹한 학생		○	○	○	○
11	학생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하거나 출입하도록 강요한 학생		○	○	○	○
12	공공기물,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	○	○	○
13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14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 및 동조한 학생		○	○	○	○
15	시험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16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17	무단가출로 미인정 결석 중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18	도박(인터넷 도박 포함) 및 사행성 행동을 한 학생		○	○	○	○
19	불건전한 행위로 학교생활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20	교내 음란행위, 음란물 소지로 미풍양속을 해한 학생		○	○	○	○
21	흥기를 휴대한 학생		○	○	○	○
22	학교의 공공기물, 집기류 및 차량 등을 고의로 훼손 및 파손한 학생		○	○	○	○
23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24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 윤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학생			○	○	○
25	환각제(본드, 가스, 마약)를 사용하거나 동조한 학생			○	○	○
26	징계(선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27	징계 중 위 각 항을 재차 위반한 학생			○	○	○
28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한 학생				○	○
29	형법상 유죄 판결을 받은 학생				○	○

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본교 학생생활규정 중 수업 중 교육활동 방해에 관한 조항 신설

가.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수업 중 교육활동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

나. 내용

제31조(학급 및 수업에서의 태도)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2회 이상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교육 활동 방해 행위: 수업 중 돌아다니기, 장난, 잡담, 소음 등	교실 내 다른 좌석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 본인 준비	
2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1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사물함 앞, 교실 뒤편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단, 실외 공간일 경우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리 위치를 교사가 정할 수 있음)	학생 본인 준비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남관 1층 상담실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해당 학생 담임(부재시 해당 학생 사안담당, 학년부장, 인성부장, 교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남관 1층 상담실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본교 학생생활규정 중 수업 중 소지품 분리 보관에 관한 조항 신설

가.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수업 중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의 분리 보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

나. 내용

제36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①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한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단, 2회 이상의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36조 제1항의 물품을 찾기 위해 학생의 동의를 없거나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압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③ 물품에 따른 분리 요건·기간·장소·방법 등은 아래 표에 따른다.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36조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남관 1층 상담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제3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는 반환의 대상은 보호자로 한다.

※ 폐기의 경우는 소유물 포기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단, SMS(문자메세지), 유선 연락 등 통상적인 연락을 여러 번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한다면 폐기할 수 있다.

※ 주의 및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예시 :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 및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 포함))

끝.